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명령의 절차와 충전시설 관리 전담기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 과태료 등을 규정하여 충전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조치명령(안 제52조의7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절차 등을 규정

나.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 지정(안 제52조의8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 전담기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과태료(안 별표 15 제2호에 신설)

법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를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6을 제52조의8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2조의6) 제1항 중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을 “법 제58조의14제1항 또는”으로, “법 제58조의11제1항에”를 “법 제58조의14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를 “법 제58조의14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11제3항”을 “법 제58조의14제3항”으로 하며, 제52조의6 및 제5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2조의6(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조치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충전시설 운영자는 지체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제2호의 조치기간 내에 제1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된 조치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치 사항 및 방법

2. 조치 기간

제52조의7(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법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을 보유한 기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의20 중 “법 제58조의11제1항”을 “법 제58조의14제1항”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폐의2. 법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4호의2	50	70	100
--	-----------------	----	----	-----

폐의3.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0호의2	200	200	200
--	---------------------	-----	-----	-----

별표 15 제2호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제10호의2”를 “제3항제10호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2조의6(저공해자동차등 충전 시설 조치명령) ①</u>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조치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u>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충전시설 운영자는 지체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u>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제2호의 조치 기간</u>

<신 설>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
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

내에 제1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보고된 조치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치 사항 및 방법

2. 조치 기간

제52조의7(저공해자동차등 충전
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①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법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
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을 보유
한 기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지정하
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
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해야 한다.

제52조의8(수소연료공급시설 설
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

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
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
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
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 3. (생략)

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조의14제1항 또는 -----

----- 법 제58조의14

제1항에 -----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8조의14제2항제4호---

---.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8조의14제3항-----

-----.

1. · 2. (현행과 같음)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4의19. (생략) 4의20. <u>법 제58조의11제1항</u>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4의21. ~ 13. (생략) ③ (생략)	----- ----- ----- ----- ----- -----. ----- -----. 1. ~ 4의19. (현행과 같음) 4의20. <u>법 제58조의14제1항</u> ---- ----- ----- 4의21.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연 락 처	(044) 201 - 6884